

대학교육 혁신 결과물에 관한 공유 및 확산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루터대학교(‘우리 대학’으로 이하)의 대학교육혁신과 관련한 모든 연구 및 적용 결과물 등을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타 대학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관부서) 대학교육혁신 결과물 등의 교내 공유확산 활동, 대외 공유 및 확산하는 세미나 개최 및 보도기사 등의 관리는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 추진하고, 대학교육혁신 결과물 등의 운영,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관리부서는 교학처로 한다.

제3조(실행부서) 대학교육 혁신 결과물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참여하는 모든 부서가 이에 따른다.

제4조(공유 및 확산을 위한 결과물) 대학교육 혁신 결과물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.

1. 교육과정 개발,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
2. 교수법 및 학습법 지원 프로그램 개발,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
2. 학생 진로 및 상담 지원 프로그램 개발,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학생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,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
4. 기타 대학교육 혁신 결과물에 관한 사항

제5조(공유 및 확산방법) 제4조에 해당하는 항목은 우리 대학과 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들과 교류하고,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각 기관의 지침으로 정한다. 단,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기획조정처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